## [ ]강사 [ ]기능검정원 자격증 재발급 신청서

접수번호		접수일자			처리 기간	30일	
신청인	성명			생년월	실일		
	주소			 (전화반	lō :		)
	전자우편주소			(			
자격증	자	격종별	자격증 번호			발급일자	
재 발급 내 용	접수일자		접수번호			재발급 사유	
「도로교통법 시행규칙」 제121조제1항에 따라 자격증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.							
						년 월	일
신청인						(서명 또는	인)
<b>도로교통공단</b> 귀하 							
영수확인증				담당	· 실	· 장장	
첨 부 란							
1. 자격증(헐어 못쓰게 된 경우만 해당합니다.) 참부서류 2. 증명사진(3.0Cm×4.0Cm) 2매						수수료: 「도로교통 제139조에 따라 도텔	
업무담당자 확인사항						공단이 경찰청장의 승인 을 받아 결정·공고하는 금액	
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							
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주민등록표 초본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							
※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주민등록표 초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. 다만,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를 제시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초본 확인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.							
신청인						(서명 또는 (	인)
처리절차 - 시원보 지보							
신청서 작성 (신청인)		접수 <b>→</b> (도로교통공단)		검토·결재 → (도로교통공단)		자격증 교부 (신청인)	